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2. 15.
건설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 출 자 : 이기동의원 외 7인
-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8일
- 상정일자 :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8. 12. 4 :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 기 동 의원)

- 제안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거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하여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음(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문화전문위원 운영 해)

-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 현재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의 연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이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와 운전 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 적성(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0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기타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중에서 교육훈련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응급처치방법
4.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시행 1월전까지 이를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한다.